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7. 22. 선고 2020고정 842 판결 모욕

대 구 지 방 법 원 서 부 지 원

판 결

사건 2020고정842 모욕

피고인 A

검사 김미은(기소), 정민섭(공판)

변호인 변호사 신성욱(국선)

판결선고 2021. 7. 22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

피고인은 피해자 B과 페이스북으로 알게 되어 실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이, 피고인과 C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, 피해자와 C은 호감을 가지고 실제 몇 번 만났던 사이, 피고인과 D은 지인관계, 피해자와 D은 인터넷상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, 피해자는 청각장애, D은 지적장애가 있다.

피해자는 2020. 7. 29. 17:00경 Col D에게 폭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페이스북 에 C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, 이에 Col 같은 날 20:00경 C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D을 지칭하여 장애인들끼리 잘 논다'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전체공개 상태에서 피해자 가 재차 C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자, 피고인이 '언니두 자꾸 그러지마T 서로 이미지 만 씹창남 진짜 D가 안쓰러운 건 사실인데 걔도 잘못한게 '음총마나I'라는 댓글을 올 리면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댓글을 올리면서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.

피고인은 2020. 7. 29. 22: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체공개 상태인 C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피해자에 대하여 언니 장애인보다 나아', '귀안들리는 어벙이보다 귀잘 들리고 말잘하는 돼지가 나어, '날씬한 장애인보

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다 뚱뚱한 비장애인 할래 T 심 지어 언닌 2콤보로 귀도 안들리고 말도 어버버버버 하자나', '귀도 잘안들리고 말도 찐 장애처럼 어버버 하더라.. 장애라더라..' '언니 우리집강아지는 말귀잘알아듣는데 언니 우리집 강아지보다 말귀 못알아먹잔옹크키', '어휴 병신련 여기저기 욕들어 쳐먹으니까 이제 나로 태클거네크키', '진짜 개씹 정신병자련이네크크좃나 지가 우월하고 당 찬 여성 대장부인척 하는데 현실은 어버버 고작 할수 있는건 키보드 뚱땅뚱땅키키 '살면서 크 차단박고싶은련 생겼네 말이 안통해도 저렇게 안통하냐→', '지 적장애 지체장애→크다 거기에 걍애자'라는 댓글을 올리고, 2020. 7. 30. 10:00경 불상 의 장소에서 전체공개 상태인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에 대하여 말도제대로 못하고 귀안들리는 장애인한테 돼지라는소리들었다.. 족같네T'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 해자를 모욕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- 1. 고소장

법령의 적용

-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- 형법 제311조, 벌금형 선택
-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 1.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판사 이형원